

규격서

구분	세부 항목	수량	단위	비고
인건비	총괄 인력	1	인	
	운영 인력	2	인	
	통역인력(순차 통역) 10명 x 4일	40	인	
	현장 운영인력 15명 x 4일	60	인	
고용보험	인건비 x 1.15%	1	식	
산재보험	인건비 x 0.96%	1	식	
전문가활용비	동시통역 1명 4일	4	인	
	학술행사 진행자 2명	2	인	
	학술행사 토론자 3명 2일	6	인	
	토론 참여자 40명	40	인	
기타경비	기념품 제작비 500인	1	식	
	마켓 나이트 운영비 200명	1	식	
	런치미팅 운영비 200명	1	식	
	스페셜 토크 운영비 50명	1	식	
	마켓라운지 운영비(케이터링) 100명	1	식	
	해외 인사 국내이동 40회	1	식	
	현장 운영비 4일	1	식	

- ※ 직접 고용 인건비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
- ※ 순차 통역인력의 경우 해외 인사와 국내 단체가 비즈니스 업무 협의가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실력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
- ※ 동시 통역사는 통번역대학원 석사이상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.
- ※ 학술행사 토론자 및 진행자 등 전문가는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력으로 구성하며, 사례비는 전문가 활용비 편성지침(별도 붙임)에 의거하여 편성하여야 함.

전문가 활용비 편성지침

[전문가 활용비 편성지침]

※ 「청탁금지법」 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및 동법 시행령 [별표 2]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함.

※ 기관 소속 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음.

가. 강의료

구분	기 준	지급액 한도
A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/현직 장/차관급 ■ 전/현직 대학총장/학장급 ■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■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, 국장급 이상 ■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(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작가, 예술인, 연예인 등) 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	25만원/1시간
B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(기능대) 조교수 이상 ■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■ 정부 출연기관(연구기관) 및 문화예술계 사단.재단법인 재직자 ■ 개인기관의 장(원장, 소장) ■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■ 전문직 종사자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■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	15만원/1시간
C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A,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	10만원/1시간

- 2시간: 1시간기준의 200% 지급
-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% 만 적용
- 영상회의 등에 의한 강의 사례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 가능함.
- 동일인이 2일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, 각일로 계산
- 위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,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
 - *단,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(대중교통비 기준)(증빙자료(영수증 등) 내 외부인사 서명필수)
 - *단, 자료집 제작을 위해 강사에게 원고작성을 별도로 요구하는 등 강사의 별도의 노력과 시간, 비용이 투자된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지 1장당(PPT 슬라이드 1매당) 5,000원 이하 책정 가능
- 위 기준단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강 등의 경우에는(전문강사, 대중강사, 해외초청인사 등) 시장가격, 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센터 협의를 통해 별도 책정 가능

나. 학술행사 사례비 (발표 및 토론사례비, 진행자사례비)

구분	기 준	지급액 한도
발표자	A급	강의료 기준 동일
	B급	"
	C급	"
사회자	A급	40만원 (1회 3시간)
	B급	30만원 (1회 3시간)
	C급	25만원 (1회 3시간)
토론자	A급	30만원 (1회 3시간)
	B급	25만원 (1회 3시간)
	C급	20만원 (1회 3시간)

-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지급 가능
- 동일인이 2일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, 각일로 계산

- 위 사례비에는 원고료,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
 - *단, 발제자의 거주지와 행사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(대중교통비 기준)
 - *단, 자료집 제작을 위해 발제/토론자에게 원고작성을 별도로 요구하는 등 발제/토론자의 별도의 노력과 시간, 비용이 투자된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지 1장당(또는 PPT 슬라이드 1매당) 5,000원 이하 책정 가능
- 위 기준단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(해외초청인사 등) 시장가격, 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표의 결재를 통해 별도 책정 가능

다. 원고 및 편집사례비

기준 1 (원고 집필인)	기준 2 (원고 내용)	지급액 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분야 권위자 ■ 외부인사지급기준 A등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별원고 (비평,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,창작물 등) 	2만 5천원 (200자 원고지 1장 당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문 작가 ■ 해당분야 전문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급원고 (연재물, 전문가 지식 수록 등) 	2만원 (200자 원고지 1장 당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 분야 유경험자 ■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반원고 (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) 	1만 5천원 (200자 원고지 1장 당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반인, 독자 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료원고 (자료를 발췌,참고,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) 	5천원 (200자 원고지 1장 당)

- 위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
- 위 기준단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50% 가산 지급 가능

라. 자문 및 회의사례비

구분	기준	지급액 한도
회의 참석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문회의 ■ 좌담회 ■ 이사회 참석수당 ■ 인사위원회 	20만원 (1회 2시간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서면회의 	10만원

-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하며, 초과지급 한도액은 1회(2시간) 사례비의 200%
 - *단, 서면회의에는 적용하지 않음

-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
 - *단, 참석자의 거주지와 행사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(대중교통비 기준)
-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함.

마. 통역료

-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(www.hufscit.com)(이하 통번역센터) 기준 준용
- 의전통역의 경우도 통번역센터 기준 준용
- 단순행사통역의 경우 20,000원/h 기준 적용

바. 번역 및 감수료

-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(www.hufscit.com)(이하 통번역센터) 기준 준용
- 외국어 → 외국어로 번역 시 통번역센터 기준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업체 대행의뢰 사례 및 시장가격 비교검토 등의 방법으로 단가 기준 책정
- 통번역센터 기준을 준용하기 힘든 특수 언어, 전문번역이 요구되는 서류(계약서 등)의 경우, 전문 업체 대행의뢰 사례 및 시장가격 비교검토 등의 방법으로 단가 기준 책정
- 감수료의 경우 통번역센터 기준 번역료의 최대 50%까지 준용
- 영상 및 오디오 등 매체 번역의 경우 통번역센터 번역료 유효표 준용, 또는 전문 업체 대행의뢰 사례 및 시장가격 비교검토 등의 방법으로 단가 기준 책정

사.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

등급	월 임금
책임연구원	월 3,705,904원
연구원	월 2,841,638원
연구보조원	월 1,899,539원
보조원	월 1,424,702원

-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
- 상기 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｢예정가격 작성기준｣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년 2.3%)을 반영한 단가이며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
- 특별한 기준단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타 인적용역의 경우에도 이 기준단가 적용 가능